

2022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응암1동 주민자치회

2022년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 치 계 획 결과보고서

응암1동 주민자치회

목 차

인사말	2
응암1동 현황	4
응암1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6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7
2022년 상반기 감사 보고	16
2022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주요 활동 돌아보기	18
2022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22
2023년 자치계획 주민총회 결과보고	29
2023년 동(洞) 참여예산 사업	32
부록 응암1동 주민총회 공고문	40
부록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41

주민자치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장 이광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응암1동 주민자치회장 이광희 인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출범 2년째 되는 올 상반기는 두 번에 걸친 선거와 비대면 회의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는 모든 회의가 대면으로 하면서 6월 역량강화워크숍 이후 위원님들 간에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열리며 올해 사업계획들이 순조롭고 보람되게 진행됨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건전한 재정 민주주의의 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의 지역을 위한 봉사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서로 숙의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8월 주민총회는 대면으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내년 사업을 정하는 멋진 시간이였습니다.

2023년 선정된 6개 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위원님과 함께 즐겁고,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축제, 워크숍, 사업실천 중에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지역 직능단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나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장 이 광 희

응암1동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응암1동장 옥유관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응암1동 주민자치 위원님들!

2021년 우리 동 주민자치회를 구성 후 2022년은 위원님들의 자치활동으로 그 어느 해보다 수확이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위원님들의 땀과 노력, 그 소중한 성과와 가치가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결정하여 주민 스스로 원하는 응암1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주민 참여 없는 주민자치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민참여가 무척 중요합니다.

매월 현혈캠페인, 매주 게이트볼 생활체육 사업, 플라스틱 관련 환경교육, 기쁨 두 배 요리교실, 플로깅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어우러져 사업을 하나씩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전통 장 담그고 나누기, 백련산 쉼터 조성 및 수목 표찰 부착, 응암역 4번출구 보행자 통로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으며,

상반기에 선거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사업들이 하반기에 일제히 추진되다보니 사업량을 소화해 내기 어려웠지만, 위원님들의 참여 의지가 있었고 사무국 및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자료를 통해 지난 일 년 과정을 되돌아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암1동장 옥 유 관

응암1동 현황

statistical chart
동 일반현황

면적	행정구역		인구수			세대수
	통	반	계	남	여	
1.2km ²	33	127	32,950	15,610	17,340	14,925

statistical chart
종류별 주택수

합계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계	단독	다가구	영업겸용				
7,341	607	110	362	135	2,762	198	3,697	77

statistical chart
복지 수요

구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비고
세대	3,282	868	97	1,809	165	343	
인원	4,867	1,233	242	1,809	257	1,326	

statistical chart
주요시설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관	종교시설	금융기관	공원
4	3	3	13	5	2	41	7	3

statistical chart

자치회관 현황

지층	2층	3층	별관
공유주방, 창작실	포수마을 갤러리 주민자치회 사무실 문화의집 도서관	다목적실	포수마을만화도서관

공유주방 창작실



포수마을 갤러리 주민자치회 사무실



문화의집 도서관 다목적실



포수마을 만화도서관 (내부/외부)



응암1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란?



동(洞)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사업 선정 · 행정 사무 위탁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습니다.

present condition of organization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구성일 : 2021. 1. 1.

총인원 : 48명(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포함)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단, 회장,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대 상 : 해당동 관할구역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위: 명, 2022.12.31. 기준)

전 체			모집 부문		40대 이하			50대 이상			비 고
합계	남	여	개인	단체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44	25	19	24	20	8	2	6	36	23	13	40대 이하 18% 50대 이상 82%

executive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단위: 명, 2022.12.31. 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이광희	윤석화	노영상, 장남운	이연정	강윤형	박시형, 서태식, 송수남, 한명신

Conferencing System

회의 체계

주민자치위원, 행정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회의 체계 구축

구 분	참여자	주요 내용(안건)	비 고
정기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운영세칙, 사업 등 주요 의결, 공유사항	월 1회
운영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분과별 활동 현황 공유 및 논의, 자치계획 수립 논의, 정기회의 상정 안건 정리와 준비	월 1회
민관협력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동장, 팀장, 담당 주무관	주요 행정사항, 사업 공유, 주민총회 협의 등	필요 시
분과회의	분과장, 분과총무, 분과위원, 분과원	분과별 사업계획, 실행, 공유, 평가	월 1회
사무국 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담당 주무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 공유, 지출결의 등 회계 업무	수시
실무회의	사무국장, 간사, 담당 주무관	실무 협력 논의 및 결정	수시

※ 임시회의 :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Major activity

분과위원회 주요 활동



분 과 명	주요 활동 범위
건강복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복지 사각지대 조사,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구 참여예산사업 등
교육문화	전세대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 축제 발굴, 기획 및 진행, 시·구 참여예산사업 등
생활환경안전	생태 및 주거환경 조사, 환경개선 활동,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구 참여예산사업 등
자치기획	자치회관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한 조사, 기획 및 운영, 시·구 참여예산사업 등

2022 Schedule

2022년 주민자치회 주요 일정

단 계	일 정	주요 내용
운영세칙 수립	2022.03.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응암1동에 맞는 운영세칙 수립 - 내용 : 조례에 따른 세부 사항 규정 - 운영세칙 수립, 운영세칙위원회 구성 - 운영세칙위원회 2회 회의 개최
인사위원회 구성	202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사무국장, 간사 선발 - 내용 : 선발일정 및 방법논의 - 인사위원회 6회 회의 개최 - 공고 및 접수, 심사결과 공고, 면접실시, 모집결과 공고 - 선발 방법(서류전형, 면접전형) - 지원 조건, 서류 점수, 가산점 항목
주민제안 컨설팅	202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제안 공모 안내 - 주민제안서 작성법 안내 - 주민제안 1:1 상담 - 제안내용 구체화 - 세부 실행계획 수정보완 지원
자치계획 수립	2022.0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의제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
정기회의	2022.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민주적 회의 운영과 주민주도 주민자치회 운영 - 내용 : 자치계획 전반사항 - 응암1동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운영 - 자치계획 및 실행에 관한 의결 - 정기회의 10회 개최 - 운영회의 10회 개최
분과활동	2022.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마을의제 발굴 등 - 내용 : 자치계획 및 실행 - 4개 분과 운영 - 분과별 회의 총 32회 개최 - 의제발굴·실행사업 논의

단계	일정	주요 내용
의제발굴 촉진워크숍	202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자치위원 역량 강화 - 내용 :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의제발굴 촉진 - 자치계획 수립 과정의 이해 - 타 지역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례 소개 - 동 지역현황 분석 - 분과 별 의제 상상 촉진하기 - 질의응답 및 소감
역량강화 워크숍	202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총회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 시행 -역할분담과 주민총회 절차 안내
자매결연지 의제발굴 워크숍	20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결연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발굴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문화 발전을 위한 도농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화문석마을 주요 생산품인 화문석 짜기 체험 · 순무김치 만들기를 통해 마을 간 이해 · 강화도 주요 생산품인 소창체험관 방문 등 문화탐방 · 민주적 의사결정 및 토론을 통한 의제발굴 교육
주민총회	202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 준비위원회 활동 개요 및 주민총회 진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022.06.28. 주민총회 공고문 논의, 홍보물 제작 논의 · 2차: 2022.07.07. 주민총회 홍보물 및 홍보활동과 일정 논의 · 3차: 2022.07.21. 주민총회 거점투표소 운영 일정 논의 · 4차: 2022.07.29. 주민총회 당일 행사 공연팀과 식순 논의 · 5차: 2022.08.12. 사전 리허설 및 개표 사전 녹화 - 준비총회 실시
기타	2022.07.~202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상반기 감사 보고 - 2022년 자치안전과 점검
	2002.07.~11.	- 의제 발굴 양성가 기본과정 교육 및 심화교육
	2022.08.	-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2022.07.~09. 2022.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 3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2022.10.	-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2022.10.	- 제5회 산골마을 은오교축제
	2022.11.	- 주민자치위원 연임 및 신규모집

운영세칙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인사위원준비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연임, 신규 위원 계획 수립



의제 발굴을 위한 운영진 촉진 워크숍



주민총회 중심의 역량강화 워크숍



자매결연지 의제발굴 워크숍



주민총회 홍보활동



주민총회 거점투표 운영



제2회 주민총회



제5회 산골마을 온오교축제



분과명

건강 복지



분과회의



교육 문화



생활 환경안전



자치 기획



회의명

운영 회의

회의사진



민관협력 회의



정기 회의



기타

- 1 참여예산 주민총회
- 2 어울림 한마당
- 3 의제발굴 양성가 교육



2022년 상반기 감사 보고

statistical chart

감사 개요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제6항

감사일시 : 2022. 7. 15.(금) 13:00 ~ 14:30

감사장소 : 주민자치회 사무실(동주민센터 2층)

감사자 : 장남운

참석자 : 사무국장 이연정

Picture

진행 사진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자치회 구성과 분과원 조직2) 각종 회의운영(실무회의, 분과회의, 운영위, 정기회의, 민관협력회의 등)3) 민주적 회의운영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종합의견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서류와 문서가 적정하게 갖춰져 있었으며 주민자치회의 회계 업무 및 사업 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처리 되었음을 확인함.

붙임. 1.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제출자 감사 (장남운)

은평구청장 귀중

2022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업별 주요 활동 돌아보기

건강복지분과
헌혈! 나누면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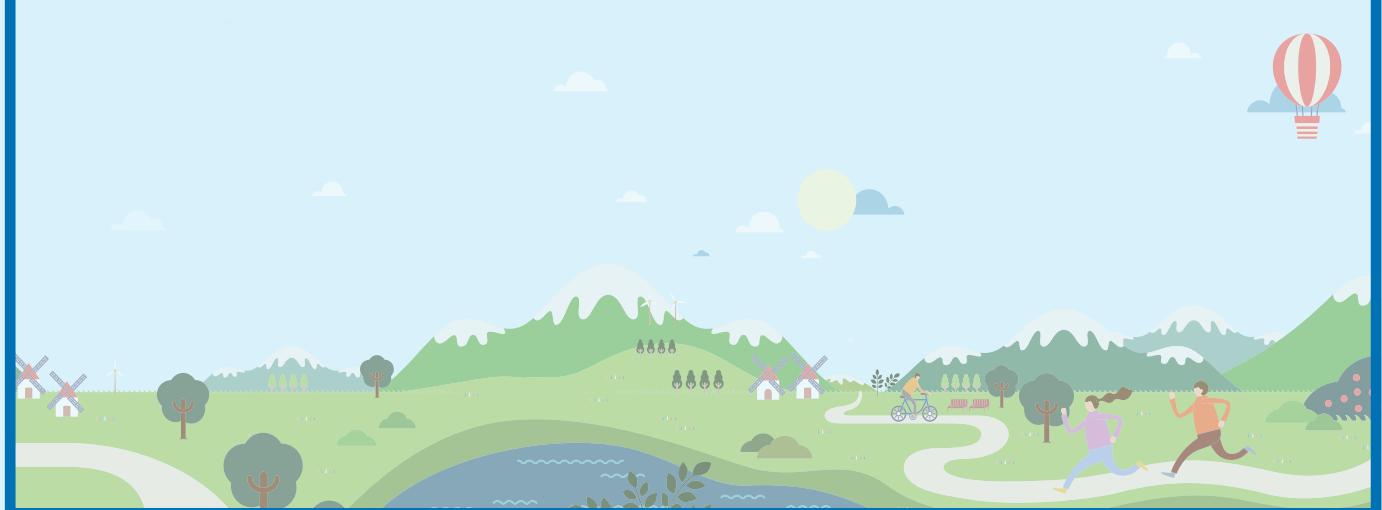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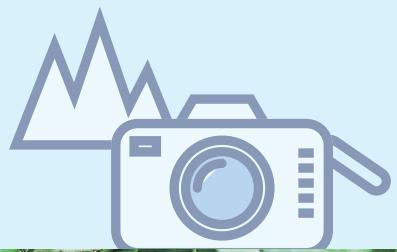


게이트볼을 이용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교육문화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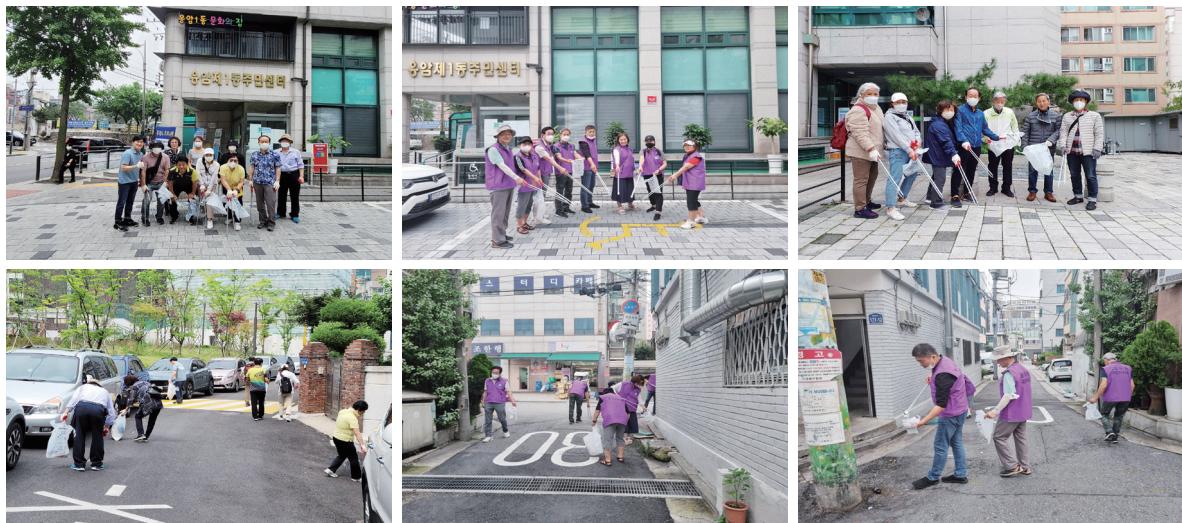
백련산 쉼터 조성 및 수목 표찰 부착



생활환경안전분과 온난한 세상을 바꾸는 플라스틱 친구들



플로깅으로 응암동을 화목하게



자치기획분과 기쁨두배 요리교실



전통 장 담그기



응암1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1. 운영비(사업비, 간사활동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사업비(시비) 600만원	2~9월	주요내용 : 행사운영비/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실비지원금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2층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2022.01.28. 교부
간사활동비(시비) 300만원	2~3월	주요내용 : 간사 활동비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2층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상반기 300만원 교부 잔여금 11,400만원 하반기 교부
사무국장활동비 (구비) 14,000만원	6~12월	주요내용 : 사무국장 활동비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2층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2022.06.28. 교부

2. 주민활동 실행사업(주민세 균등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플로깅으로 응암동을 화목하게	6~12월	주요내용 : 플로깅 장 소 : 응암1동 인근지역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6월부터 10회 실시 위원 개별 플로깅 실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주민총회 준비 사업	6월	주요내용 : 역량강화 워크숍 및 주민총회 준비 사업 장 소 : 한옥촌 신선마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 일대)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2022.06.15.(수) 주민총회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 시행 (강사 : 임도식)

3. 실행사업(동(洞) 참여예산 사업)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개요	추진결과
헌혈! 나누면 힘이 됩니다.	7~11월	주요내용 : 헌혈 장 소 : 은경빌딩 앞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7월부터 5회 실시
게이트볼을 이용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9~11월	주요내용 : 게이트볼 장 소 : 꿈나무 마을 풋살장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9월부터 10회 실시
온난한 세상을 바꾸는 플라스틱 친구들	10~11월	주요내용 : 환경교육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3층 외 타지역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10월부터 5회 실시 (탐방 1회 실시)
응암역 4번출구 주변 보행자 통로 개선	3~10월	주요내용 : 시설사업 장 소 : 응암역 4번 출구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위치: 응암동 114-9 상단 좌측 (응암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옆)
백련산 쉼터 조성 및 수목 표찰 부착	1~10월	주요내용 : 시설사업 장 소 : 백련산 쉼터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위치: 백련근린공원 산1-27 일대
전통 장 담그기	3월 10~12월	주요내용 : 장 담그기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지하 공유주방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3월 된장 11월 효소 고추장 12월 고추장
기쁨두배 요리교실	6~9월 11월	주요내용 : 요리교실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지하 공유주방 실행주체 : 응암1동 주민자치회	6월부터 14회 실시 11월 김장 나눔

4. 보조금 2022년 예산

총 예산액 **135,100천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액 : 34,400천원



예산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시비	구비	
주민자치회	소 계	34,400	9,000	25,400	
	사업운영비	6,000	6,000		사무관리비 733,000원 공공운영비 통신요금외 1,223,000원 회의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004,000원 자치계획 실행 행사운영비 2,000,000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 강사료외 1,040,000원
	간사활동비	14,400	3,000	11,400	$1,200,000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14,400,000\text{원}$
	사무국장활동비	14,000		14,000	$2,000,000 \times 1\text{명} \times 7\text{개월} = 14,000,000\text{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예산액 : 25,700천원



예산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시비	구비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주민세 환원)	소 계	25,700		25,700	
	의제개발비	24,000		24,000	- 의제발굴 워크숍 10,000,000원 -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9,000,000원 -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5,000,000원
	플로깅으로 응암동을 화목하게~	1,700		1,700	행사 운영비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1,400,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식대비 $8,000\text{원} \times 30\text{명} = 240,000\text{원}$ 다과비 $4,000\text{원} \times 15\text{명} = 60,000\text{원}$

동(洞) 참여예산 사업 예산액 : 20,000천원



예산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시비	구비		
주민자치회 (동)참여예산 (구비)	소 계	20,000		20,000		
	헌혈! 나누면 힘이 됩니다	10,000		10,000	행사 운영비	- 홍보비 및 운영비 3,000,000원 - 물품구입비 4,000,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식대비 $8,000 \times 30\text{명} \times 9\text{회} = 2,160,000\text{원}$ 다과비 $4,000 \times 210\text{명} = 840,000\text{원}$
	게이트볼을 이용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10,000		10,000	행사 운영비	홍보비 및 운영비 1,000,000원 물품구입비 3,000,000원 장소 대여료 3,000,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강사료 $100,000\text{원} \times 20\text{회} = 2,000,000\text{원}$ 식대비 $8,000\text{원} \times 5\text{명} \times 20\text{회} = 800,000\text{원}$ 다과비 $4,000\text{원} \times 50\text{명} = 200,000\text{원}$



동(洞) 참여예산 사업 예산액 : 55,000천원

■ 예산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시비	구비		
	소 계	55,000		55,000		
주민자치회 (동)참여예산 (구비)	온난한 세상을 바꾸는 플라스틱 친구들	6,700	6,700		행사 운영비	홍보물 제작 1,000,000원 강사비 $200,000\text{원} \times 10\text{회} = 2,000,000\text{원}$ 버스임차료 $500,000\text{원} \times 4\text{회} = 2,000,000\text{원}$ 소형 플라스틱 수거함 제작 $100,000\text{원} \times 5\text{개} = 500,000\text{원}$
					행사실비 지원금	식대비 $8,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10\text{회} = 800,000\text{원}$ 다과비 $4,000\text{원} \times 10\text{명} \times 10\text{회} = 400,000\text{원}$
	응암역 4번출구 주변 보행자통로개선	10,000		10,000	- 기존 펜스 제거 - 인도 경계 펜스 설치 - 보도블럭 교체 등	
	백련산쉼터조성 및수목표찰부착	9,500		9,500	- 쉼터 조성(의자 설치 등) - 수목 표찰 부착	
	전통 장 담그기	16,800	16,800		행사 운영비	홍보물 제작 1,000,000원 행사물품 구입 향아리 $50,000\text{원} \times 30 = 1,500,000\text{원}$ 덮개 $10,000\text{원} \times 30\text{개} = 300,000\text{원}$ 식자재(메주, 소금 등) = 12,200,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식다과비 $8,000\text{원} \times 9\text{개월} \times 25\text{회} = 1,800,000\text{원}$
	기쁨두배 요리교실	12,000		12,000	- 홍보물 제작(현수막 등) 480,000원 - 강사비 $36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2\text{회} = 720,000\text{원}$ - 조리기구, 주방용품 구입 960,000원 - 식자재 구입 $820,000\text{원} \times 12\text{회}$ (회당 4인 $\times 10\text{가구} = 9,840,000\text{원}$)	

5. 보조금 2022년 예산 내용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집행현황(2022.12.16. 기준)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내역			잔액
		1~9월	10~11월	12월 16일	
총 계	34,400,000	24,715,040	6,400,000	3,200,000	84,960
사업운영비	6,000,000	5,915,040	0	0	84,960
간사활동비	14,400,000	10,800,000	2,400,000	1,200,000	0
사무국장활동비	14,000,000	8,000,000	4,000,000	2,000,000	0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주민세 환원) 집행현황(2022.12.16. 기준)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내역			잔액
		1~11월	12.16일 까지	12.16일 이후 (사용예정 금액)	
총 계	25,700,000	10,729,970	1,399,430	5,000,000	8,570,600
의제개발비	24,000,000	9,029,970	1,399,430	5,000,000	8,570,600
플로깅으로 응암동을 화목하게	1,700,000	1,700,000	0	0	0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동(洞) 참여예산 집행현황(2022.12.16. 기준)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일	집행내역	잔액
		1~11월		
총 계	20,000,000		15,518,200	4,481,800
현혈! 나누면 힘이 됩니다	10,000,000		8,636,400	1,363,600
게이트볼을 이용한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10,000,000		6,881,800	3,118,200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동(洞) 참여예산 집행현황(2022.12.16. 기준)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일	집행내역	잔액
		1~11월		
총 계	55,000,000		46,630,320	8,369,680
온난한 세상을 바꾸는 플라스틱 친구들	6,700,000		2,254,620	4,445,380
응암역 4번출구 주변 보행자 통로 개선	10,000,000		10,000,000	0
백련산 쉼터 조성 및 수목 표찰 부착	9,500,000		8,872,000	628,000
전통 장 담그기	16,800,000		13,503,700	3,296,300
기쁨두배 요리교실	12,000,000		12,000,000	0

2022년 자치계획 주민총회 결과보고

주민이 직접 발굴 · 제안한 마을의제 중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I 총회 개요

- * 행 사 명 제2회 응암1동 주민총회
* 일 시 2022. 8. 13.(토) 10:00
* 장 소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 주요내용 -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감사 결과 보고
- 2023년 자치계획 의결
·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 * 투표결과 투표 자격 : 만 18세 이상(2004. 8. 13. 이전 출생)

응암1동 거주자 및 생활권자

정 족 수 : 주민총회 개최일 한달 전(2022. 7. 1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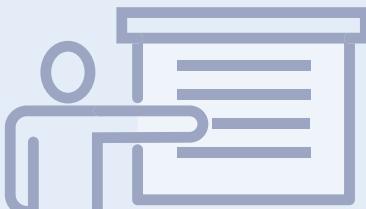
주민등록상 인구 32,890명 중 329명(1%) 이상

투 표 수 : 총 1,239명(투표율 3.8%)

개표 결과 : 6개 사업 전체가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승인됨

구분	사업명(예산)	찬성	반대	기권	무효	결과
1	응암1동 마을마당공원 주변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LED 설치사업	1,208 (96%)	20 (2%)	11 (1%)		승인
2	나를 도닥이는 요리도전기	1,016 (80%)	132 (10%)	91 (7%)		승인
3	지역 주민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1,064 (84%)	102 (8%)	73 (6%)	24 (2%)	승인
4	2023 혁신캠페인	1,140 (90%)	51 (4%)	48 (4%)		승인
5	은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옐로카펫 (싸인블럭 설치 사업)	1,155 (91%)	63 (5%)	21 (2%)		승인
6	연극으로 소통하고 마음 공유하기	980 (78%)	151 (12%)	108 (9%)		승인

II 추진 현황



* 주민총회 추진 및 진행내용

내용	일정	세부 내용
주민총회 준비	2022.06.28. ~ 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권자 확인, 주민총회 공고 · 계획 수립- 사전투표 및 투표방법, 홍보방법 결정
주민총회 공고	2022.0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총회 공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22.07.23. ~ 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수막 실외용 8개, 실내용 1개, 배너 3개리플릿(투표용지 포함) 12,000매포스터 250매부채 1,000개마스크 2,000개, 마스크 스티커 2,000매마을의제 배너 8개(6개+2개)
주민총회 공연팀 섭외	2022.0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칸타렐레(우쿨렐레)한무애(한국무용)경서도 사랑(경기민요)그레이스 밸리퀸(밸리댄스)
사전투표 진행	2022.08.03. ~ 08.10 (6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온라인 투표 및 방문 투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투표 : 네이버폼- 상설투표소 : 주민센터 1층 민원실- 거점투표소 : 은경빌딩 앞, 올리브영 앞 오전팀 10시~13시 / 오후팀 16시~19시
주민총회 개최	2022.08.13.(토) 10:0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회선언내빈축사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감사 보고, 주민총회 준비 보고2023년 의제설명개표 안내 및 결과 발표경품물품 추첨폐회선언

III 행사 사진

* 사전투표 및 홍보활동



* 주민총회



2023년 마을의제	유효표 1,239표 / 무효표 24표				개표 결과
	찬성	반대	기권	무효	
1. 응암1동 마을마당공원 주변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LED 설치사업	1,208 (96%)	20 (2%)	11 (1%)		승인
2. 나를 도덕이는 요리 도전기	1,016 (80%)	132 (10%)	91 (7%)		승인
3. 지역 주민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1,064 (84%)	102 (8%)	73 (6%)	24 (2%)	승인
4. 2023 한월 캠페인	1,140 (90%)	51 (4%)	48 (4%)		승인
5. 은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올로카펫 (사인블럭 설치 사업)	1,155 (91%)	63 (5%)	21 (2%)		승인
6. 연극으로 소통하고 마음 공유하기	980 (78%)	151 (12%)	108 (9%)		승인

2023년 동(洞)참여예산 사업

응암1동 마을마당공원 주변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LED사업

■ 소요예산

총액 : 30,000,000원

■ 사업기간

2023. 3. 1. ~ 2023. 5. 31.

■ 배경 및 필요성

골목길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골목길을 벗어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골목길 조성이 필요함

■ 개요

- **사업위치**

응암1동 마을마당공원 주변 골목길

- **수혜대상**

주민 등 사용자

- **사업내용**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골목길 조성을 위해 바닥 LED 조명 설치

- **추진주체 및 협력자**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기획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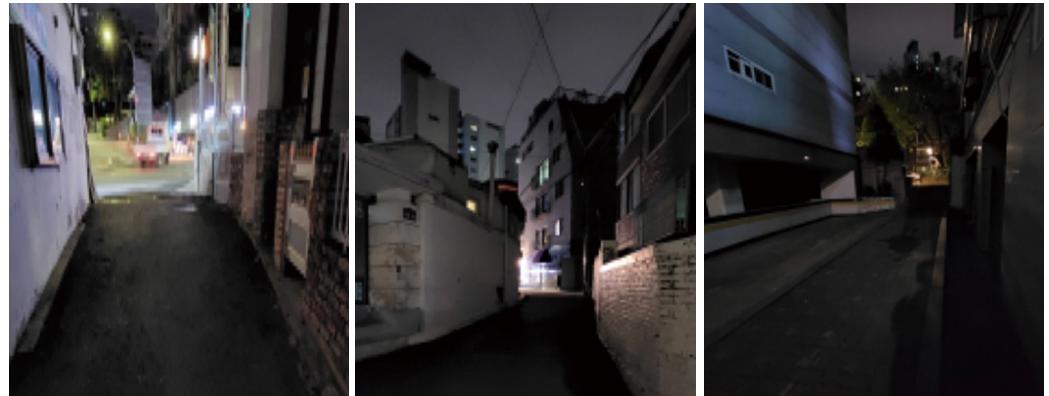
■ 기대효과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밤길 안전 네 구현에 기여
보기 좋은 골목길 조성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골목길로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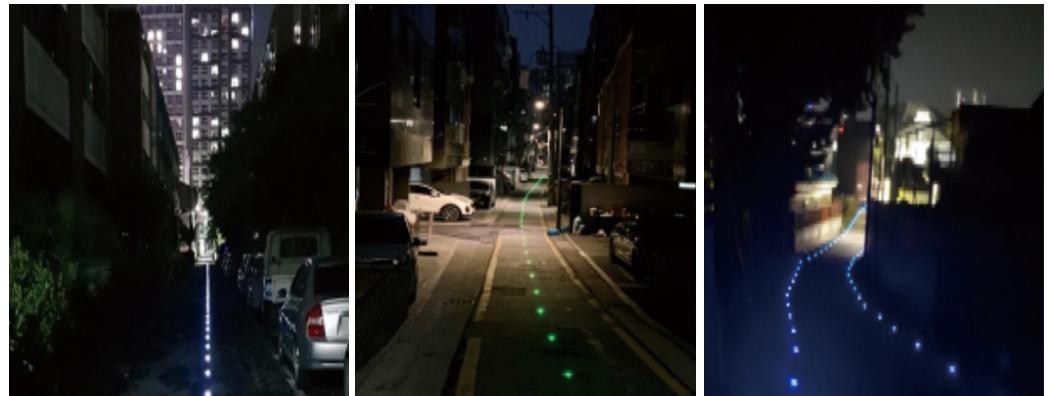
Before picture

사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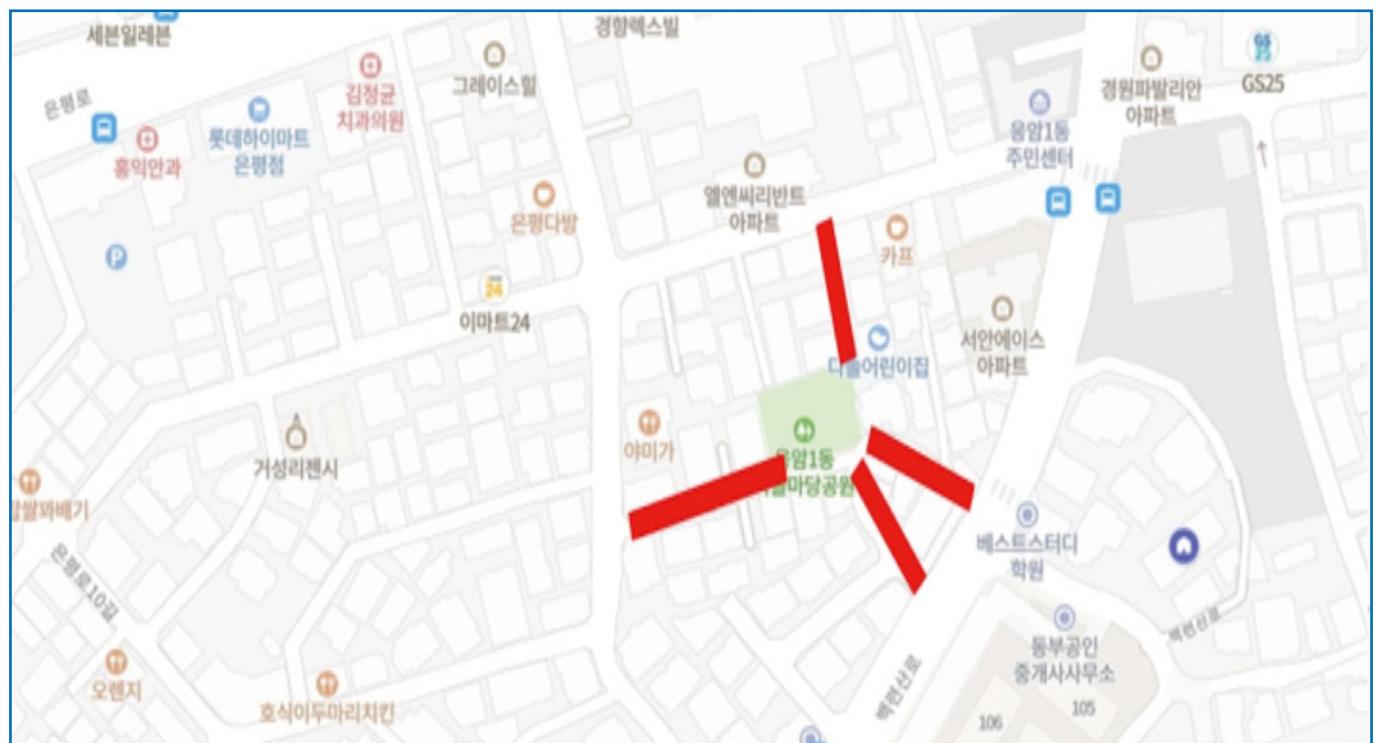
After picture

사업후



Rough map

사업위치도



2023년 동(洞)참여예산 사업

나를 도닥이는 요리 도전기

■ 소요예산

총액 : 11,000,000원

■ 사업기간

2023. 3 .1. ~ 2023. 8. 30.

■ 배경 및 필요성

주민자치회관 주방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요리를 통해 재능기부를 기획하게 됨. 더불어 단순한 재능기부가 아닌, 완성된 음식으로 저소득 가정에게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개요

• 사업위치

응암1동 주민센터 지층 공유주방



•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선착순 12명~15명 모집

• 사업내용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요리 재능기부로 기본 밑반찬 및 김치류 등을 만들어 당일 완성된 요리는 저소득 가정(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나누는 요리도전기로 발전시켜 진행

• 추진주체 및 협력자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기획분과

■ 기대효과

요리 도전기를 통해 재능기부로 요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나누었을 때의 기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고취 시킬 수 있음

2023년 동(洞)참여예산 사업

지역 주민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 소요예산

총액: 14,000,000원

■ 사업기간

2023. 2. 1. ~ 2023. 11. 30.

■ 배경 및 필요성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입맛을 지키고 장 담그기 문화를 알리고자 함.

■ 개요

• 사업위치

응암1동 주민센터(옥상쉼터) 및 꿈나무마을 시설내
(백련산로 14길 20-11)



• 수혜대상

지역 주민 및 청소년(주민자치회 위원도 가능)

• 사업내용

체험 행사로 진행 후 숙성된 장은 연말 관내 시설 및 저소득 가정 등에 기부

• 추진주체 및 협력자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기획분과

■ 기대효과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로 성인병이나 당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점점 사라져 가는 장 담그기에 대한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경험과 소통

2023년 동(洞)참여예산 사업

2023년 헌혈 캠페인

■ 소요예산

총액 : 10,000,000원

■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1. 30.

■ 배경 및 필요성

국가적으로 부족한 혈액 부족 제공 및 응암1동 자발적 나눔 봉사

■ 개요

- 사업위치

응암1동주민센터, 서부병원 앞, 응암역 앞

- 수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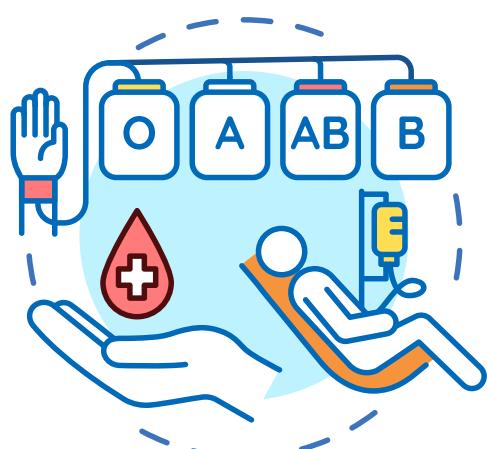
만18세 이상 누구나

- 사업내용

매달 1회 이상 헌혈 및 캠페인

- 추진주체 및 협력자

응암1동 주민자치회 건강복지분과



■ 기대효과

헌혈 캠페인 추진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기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하고 이웃사랑 실천의 문화 확산

2023년 동(洞)참여예산 사업

은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옐로카펫(싸인블록) 설치 사업

■ 소요예산

총액 : 17,500,000원

■ 사업기간

2023. 3. ~ 2023. 4.

■ 배경 및 필요성

은평초등학생을 포함한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 시 안전 확보

■ 개요

- 사업위치

은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건널목)

- 수혜대상

은평초등학교 학생 및 은평구민

- 사업내용

횡단보도 양쪽에 옐로카펫(싸인블록 설치)

사업 전



사업 후



- 추진주체 및 협력자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

■ 기대효과

횡단보도 양쪽에 옐로카펫(싸인블록) 설치를 통해 눈 식별도를 높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Rough map

사업위치도



Current status picture

현황사진



2023년 동(洞)참여예산 사업

연극으로 소통하고 마음 공유하기

■ 소요예산

총액 : 17,500,000원

■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1. 30.

■ 배경 및 필요성

- 마을주민들간에 낭독과 연극을 통해 마음치유와 세대간의 소통과 화합
-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과의 공감과 공존

■ 개요

- 사업위치

응암1동주민센터

- 수혜대상

은평구 관내 주민(주민자치위원도 가능)

- 사업내용

- 희곡이나 소설 시등 좋은 문학작품을 소리내어 읽기
- 발성 호흡 감정표현 분석 · 낭독과 연극의 기초이론과 실습하기



- 추진주체 및 협력자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

■ 기대효과

은평구민 간의 낭독과 연극을 통한 공감과 마음치유와 문화교류
세대 간의 공연과 연습하면서 소통과 이해 갈등극복
문화소외계층에 기회 제공과 마을 주민 간의 문화교류

부록 | 응암1동 주민총회 공고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제2호

응암1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9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민총회 개최

- 일 시 : 2022년 8월 13일 (토) 10시
-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2. 보고 및 안건사항

- 보고사항 :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 및 감사 결과 보고
- 안건사항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3. 주민총회 투표 자격

- 만18세 이상(2004.08.13.이전 출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투표기간 및 방법

- 투표기간 : 2022.08.03.(수) ~ 2022.08.10.(수)
- 온라인 및 현장투표 : 보다 자세한 방법은 추후 안내

5. 개최요건

-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달 전(2022.07.13.) 주민등록상 인구 32,890명 중에서 1%인 329명 이상의 투표로 개최합니다.

6. 결과보고 : 은평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자료집 배포

7. 문의사항 : 응암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 (☎02-351-3824)

* 위 내용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장



부록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자료 검토 및 의견 수렴	2022. 2. 9. 운영세칙준비위원회 개정 조례 설명회
운영세칙 1차 초안 정리	2022. 2. 11.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회의
운영세칙(안) 최종 확인	2022. 3. 11.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회의
제정	2021. 3. 18. 2021년 임시회의
일부 개정	2021. 8. 26. 2021년 4차 정기회의
전면 개정	2022. 3. 24. 2022년 2차 정기회의

2022. 3.

응암1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21.03.18.

(일부개정) 2021.08.26.

(전면개정) 2022.03.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응암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호선 또는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1동에서 선출된 구의원과 응암1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말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8. “자문위원”이란 응암1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4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갈등해소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종교적·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조직 및 편성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4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7.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운영진 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진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명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자치회장 선출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② 위 제1항이 규정하는 운영진 이외에 운영진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여한다.
④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제27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
(단, 질환, 관훈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사임) 운영진, 자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위원 7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및 분과 총무를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운영회의
4. 민관협력회의
5. 분과회의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간사는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분과는 5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과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석으로 한다(사전투표 포함).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응암1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개최 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 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위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4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장 유고 시 분과 총무가 출석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
 - ⑤ 운영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다만, 필요 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변경(제정, 개정, 폐지)
 2. 위원의 위촉 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 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 기탁물품으로 총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상·하반기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회비의 집행은 [부칙 제4조]에 따른다.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 100,000원 이내는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2022. 3. 24.)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 3.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는 계좌로 6개월치씩 일시 납부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시 단체 회비 200,000원(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애경사 경비 200,000원(자녀의 결혼 시,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시)
3. 현금성 경비(택배,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의 현금결재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③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p>	<p>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p>
제1장 총칙	<p>제5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호선 또는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6. “고문”이란 응암1동에서 선출된 구의원과 응암1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말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7. “자문위원”이란 응암1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 	<p>제5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u>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u>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호선 또는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1동에서 선출된 구의원과 응암1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말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제1장 총칙		<p>8. “자문위원”이란 응암1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원칙) ① 제4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갈등해소 및 지역 간 협력도모 6. 종교적·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p>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조(운영원칙) ① 제4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갈등해소 및 지역 간 협력도모 6. 종교적·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p>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제2장 총칙	<p>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p>	<p>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4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p>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4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제2장 총칙	<p>3.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p> <p>4.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p> <p>5.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p> <p>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p>② 제1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p>	<p>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p> <p>4.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5.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p> <p>6.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p> <p>7.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p> <p>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p> <p>② 제1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p>
	<p>제12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명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간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자치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한다.</p>	<p>제12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명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분과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자치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한다.</p>
	<p>제13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p>	<p>제13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제2장 총칙	<p>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② 위 제1항이 규정하는 운영진 이외에 운영진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p> <p>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여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결정 사항 보고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 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② 위 제1항이 규정하는 운영진 이외에 운영진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p> <p>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여한다. ④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p>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제3장 총칙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p>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p> <p>④ 사무국은 실무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p>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p> <p>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p>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위원 7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p> <p>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을 선출한다.</p> <p>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p>	<p>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위원 7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p> <p>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및 분과 총무를 선출한다.</p> <p>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p>
	<p>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운영회의 4. 민관협력회의 5. 분과회의 <p>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p> <p>③ 지원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p> <p>④ 간사는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분과는 5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p>	<p>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운영회의 4. 민관협력회의 5. 분과회의 <p>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p> <p>③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p> <p>④ 간사는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분과는 5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과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p> <p>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석으로 한다(사전투표 포함).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응암1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킨다.</p> <p>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p>	<p>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p> <p>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석으로 한다(사전투표 포함).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응암1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킨다.</p> <p>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p> <p>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p> <p>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p>	<p>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p> <p>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p> <p>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p>
	<p>제21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 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 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p> <p>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p> <p>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위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 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 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p> <p>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p> <p>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위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제22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 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p>	<p>제24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 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위원장 유고 시 분과부위원장이 출석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p> <p>⑤ 운영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p>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u>사무국장</u>, 간사, <u>분과장</u>으로 구성한다. 단, <u>분과장</u> 유고 시 <u>분과 총무</u>가 출석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p> <p>⑤ 운영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p>제23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p> <p>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자치지원관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p> <p>③ 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p>	<p>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p> <p>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u>사무국장</u>, 간사, 자치지원관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p> <p>③ 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p>
	<p>제24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p>	<p>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p>
	<p>제25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p>	<p>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으로 의결한다.</p> <p>1. 운영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p> <p>2. 위원의 위촉 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p>	<p>으로 의결한다.</p> <p>1. 운영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p> <p>2. 위원의 위촉 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p>
	<p>제26조(자치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p> <p>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p> <p>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p>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p> <p>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p> <p>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p> <p>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p>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p> <p>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p>	<p>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p> <p>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p>
	<p>제28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제29조(재정) (개정 2021. 8. 26.)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상.하반기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회비의 집행은 [부칙 제4조]에 따른다. 	<p>제31조(재정) (개정 2021. 8. 26.)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상.하반기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회비의 집행은 [부칙 제4조]에 따른다.
	<p>제30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p> <p>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 100,000원 이내는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u>사무국</u>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p> <p>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 100,000원 이내는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제31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p>제33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p> <p>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p> <p>③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p> <p>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p> <p>③ 회장은 <u>사무국</u>에서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제3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p>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p>	<p>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p>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p>
	<p>부 칙(2021. 8. 26.)</p> <p>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1. 8. 26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p> <p>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제29조(재정)를 개정하고, 부칙 제4조(회비)를 제정한다.</p> <p>제4조(회비) (개정 2021. 8. 26.)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는 계좌로 6개월치씩 일시 납부한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관협력 행사 시 단체 회비 200,000원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애경사 경비 200,000원 (자녀의 결혼 시,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시) 3. 현금성 경비 (택배,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의 현금결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 되는 사항 <p>③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p>	<p>부 칙(2022. 3. 24.)</p> <p>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 3. 24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p> <p>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u>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u></p> <p>제4조(회비) (개정 2021. 8. 26.)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는 계좌로 6개월치씩 일시 납부한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관협력 행사 시 단체 회비 200,000원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애경사 경비 200,000원 (자녀의 결혼 시, 본인·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시) 3. 현금성 경비 (택배,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의 현금결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 되는 사항 <p>③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p>

명칭	1차 개정(2021.08.26.)	전면 개정(2022.03.24.)
	<p>④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p> <p>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p> <p>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p>	<p>④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p> <p>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p> <p>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p>

2022년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22. 12.

발행처 :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 주민자치회장 이광희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9
응암1동주민센터 2층

연락처 : 02-351-3824

제 작 : 참디자인



| 응암1동 주민자치회 |